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5-29

부 산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3459 부동산취득실거래가확인
원 고	A
피 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변 론 종 결	2018. 4. 6.
판 결 선 고	2018. 4. 2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가 2011. 7. 1. 취득한 상가 건물(부산 북구 B건물 402호)에 대한 취득가격이 187,500,000원이 맞다는 확인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5-29

가. 원고는 2011. 6. 14. 공인중개사 C의 중개로 부산 북구 B건물 40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187,500,000원에 매수하고, 그 이후 C이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 1. 위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상가의 취득세를 신고하려다가 피고 측에서 위 매매대금액 187,500,000원이 이 사건 상가의 시가표준액 287,118,226원에 미달함을 이유로 위 시가표준액에 따른 신고, 납부서를 교부하자 위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결정한 취득세 13,207,42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그 이후인 2011. 7. 13. 이 사건 상가의 취득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인 위 매매대금액(이하 '이 사건 실거래가액'이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1. 7. 18. 이 사건 상가는 검증대상이 아니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할 수 없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므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0. 10.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부산지방법원은 2012. 2. 17. "이 사건 실거래가액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은 가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위 법원 2011구합5088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2012. 3. 9. 항소를 제기하였고, 부산고등법원은 2012. 7. 6. 제1심판결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위 법원 2012누1044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7. 19.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2. 10. 1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고(대법원 2012두16138 판결), 위 판결은 2012. 10. 15. 확정되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5-29

바. 원고는 2017. 8. 18. 부산고등법원 2017재누69호로 위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10. 11. 재심청구가 각하되었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고가격이 과세표준보다 낮아 과세표준에 의해 산정한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 의하면 판결문상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격으로 취득세를 산정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 확인을 구한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법률관계가 아닌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과세처분 및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종전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확인의 소는 원고에게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허용되므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아닌 사실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상가의 취득가격이 187,500,000원이라는 사실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 자체가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에 불과하여 확인의 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5-29

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더 나아가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취득가격이 187,500,000원이라는 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에는 원고패소판결의 확정에 따른 기판력으로 인한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더는 다툴 수 없게 된 이상, 원고에게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또한 행정소송법 제3조, 제4조에 의하면, 행정소송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구분되고,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무효 등 확인 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부작위위법 확인 소송의 3종류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의 종류를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에 대하여 취득가액이 187,500,000원이 맞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는 행정처분 또는 행정청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다른 유형의 소송(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에 해당하지 아니함도 명백하다.

4)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소는 여러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병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5-29

판사 안희경

판사 조연수